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92 | February 2022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Tax Note

3

- 2021년말 국세기본법 개정 시 신설된 특례 부과제척기간 사유인 ‘확정된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사안은 어떤 경우일까?

소득법인세 분야

5

- [판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납세자승)
- [판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납세자승)
- [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기각)
- [예규] 토지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 [예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예규]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예규]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재산소비세 분야

13

- [판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 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예규]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 [예규]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 [예규] 기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지방세 분야

19

- [판례] 원고와 A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A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 [예규]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관세 분야

25

- [심판례] 명품 휴대용 시계("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특수관계 등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분의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 경비율을 적용한 방법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한-베트남 FTA 상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아니하고 잠정가격으로 확정된 후 사후에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기각)

Tax Note

2021년말 국세기본법 개정 시 신설된 특례부과제척기간 사유인 ‘**확정된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 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사안은 어떤 경우일까?

1. 검토 배경

- 국세의 부과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해 버리면, 그 결정 등에 따른 처분조치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그리하여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국기법 제26조의 2 제6항 제1호).
- 한편, 확정된 결정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위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참조). 법인세 등 기간과세의 경우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과세단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결정 등이 확정(“**선행 확정 결정 등**”)된 후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후행 처분**”)을 하는 경우 위 특례규정(제1호)이 적용되지 않음(위 2012두6636 판결).
-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제1호의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등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의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2가 신설됨.
- 2021. 12. 21. 국세기본법 개정 시 과세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위 제1호의 2의 적용대상에 확정된 결정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도 포함되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에 결정 등이 확정되는 경우(2022. 1. 1. 전에 종전의 법 제26조의 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함)부터 적용함.

2. 개정 이유

- 국회는 ‘과세공평성 제고’를 이유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두38447 판결(“대상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사유(제1호의 2)의 범위를 확대하여 확정된 결정 등의 대상이 된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도 포함**시킴(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면~21면, 2021. 11. 15.)

3. 대상판결의 검토

- [사안]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을 운영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의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판매회원으로 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바이어 쿠폰’ 제도 등을 시행하여 해당 할인액만큼을 판매회원들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그 공제액(“이 사건 공제액”)을 예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공제액이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과 관련한 할인금액(공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할인금액(공급대가)을 판매수수료로 손금에 산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결국, 순효과를 따지면 부가가치세만큼 손금산입)의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법인세를 환급 받았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에 불복하였는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음(“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것을 모두 취소하여 2016. 7. 5. 원고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2017. 4. 17. 이와 관련한 원고의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는데(“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함.

3. 대상판결의 검토(계속)

- [쟁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 부과제척기간(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송의 경과]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3693 판결), 원심도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58874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위 대법원 2012두6636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특례규정을 정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처분과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2005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은 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추가하였음.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바, 대법원 2012두6636 판결에서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선행 확정 결정 등이 특례규정상의 제1호 소정의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를 뒤집기 위해 2016년말 국세기본법 개정 시 제1호의 2를 신설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2두6636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비하여 이 사건은 선행 확정판결과 후행 처분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4. 결어 및 유의점

- 과세관청은 2021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규정(제1호의 2)에 따라, 선행 확정 결정 등의 대상이 된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도 선행 확정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경정 등을 할 수 있음.
- 대상판결의 사안을 예로 들면, ① 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당초 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선행 판결(납세자 승)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개정 특례규정(제1호의 2)이 적용된다면, 처분청은 해당 당초 처분과 세목을 달리하는 법인세 부과처분(후행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② 만일, 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당초 처분)에 대하여 기각 판결(국승)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해당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구하지 않는다(물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해당 법인세를 감액경정해 주지 않더라도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액경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이 사건 당초 부가세 처분 기각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국기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임. 즉,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세목 외의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
- 그러므로, 납세자로서는 특정 세목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납세자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43873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황칠나무 등을 원료로 건강보조식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의 생산은 제주첨단단지 밖에 있는 경작지(“이 사건 경작지”)에서 재배되는 황칠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기납부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감액경정청구(“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한도액(투자누계액의 50%)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제주첨단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만을 투자누계액에 포함하고 이 사건 경작지, 그 위에 식재된 수목 및 원고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이 사건 경작지 등”)의 취득가액은 투자누계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함(이 사건 경정청구 중 피고가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9.3.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이라는 문언 자체에서 바로 장소적 요건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주첨단단지 밖에 소재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데, 특히 원고의 사업처럼 식품의 원료가 되는 수목 및 그 경작지가 상당량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유형자산이 오히려 제주첨단단지 내의 유형자산보다도 소득 발생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단지 제주첨단단지 밖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가액을 감면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만한 조세법원리 등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 제주첨단단지 입주 기업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제2항 제1호의 ‘투자누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4 제2항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은 다시 위 ‘사업용 자산’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한정하여 ‘투자누계액’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보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장소적 요건까지 더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전혀 달성 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1호가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개정되어 장소적 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이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해석이 당시에도 타당하였다거나 소급하여 타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개정은 개정 전 법문의 해석만으로는 장소적 요건이 도출될 수 없는 까닭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법문을 ‘제주첨단단지 안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1호의 문언을 근거 없이 축소해석함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TKC 코멘트]

- 국세청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 취득금액은 감면한도액의 산정기준인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법인-287, 2014. 6. 27.).

[판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사안]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공항공사법”)에 따라 국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복합교통센터를 건설하였는데, 그 중 지하 1층 내지 4층에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의 승강장, 대합실 등 철도역사의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 사건 철도역사”)이 설치되었음. 원고는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철도역사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국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으므로 위 건설비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와 같은 회수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판단]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 또는 설치하는 토지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면서(본문)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와 시설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한 것으로(단서전문), 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이 사건 철도역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하였으므로 국가가 관리할 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사업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단서후문), 위 단서 후문이 임의규정이므로, 위 단서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철도역사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한편,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국가 사이에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건설비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건설비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

[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사안] 원고는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외 6개 법인(“이 사건 임차인들”)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임차인들이 각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각 건축물(“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8~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2008년 제2기분과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신축가액 대신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방식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다만 그 금액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별 임대료를 계산하여 위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결정함(이하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세법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그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그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 자체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함. 따라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한편,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각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이 사건 각 건축물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감정가액을 토대로 해당 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일부)과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TKC 코멘트]

-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BOT방식의 사업수행 시 시설물 설치가액(대법원 판례와 같이 시설물 이전시점의 시가가 아님)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음(구 부령 제48조 제15항; 현행 부령 제61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에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지소유자의 사업기간 동안의 임대용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2013.2.15. 이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해야 하는 반면(대법원 판례 입장과 동일), 2013.2.15.이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재법인-316, 2014. 5. 15.).
- 위 대상판결(2018두39027)은 2013.2.15. 이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위 기재부 입장과 배치되지 아니함.

[심판례] 쟁점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0서7813, 2022. 1. 27.

[사안]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쟁점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베트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위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총액에 대하여 항상 10%의 고정세율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쟁점투자신탁이 수령한 배당금의 10% 상당(“쟁점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8항에 따른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의한 공제·환급 대상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결정 및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쟁점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 상당액을 부과지함.

[판단] 쟁점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에, 같은 조 제6항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세법상 도관을 통한 국외투자시 그 사업체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직접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성격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액은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공제·환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 2의 신설취지는 ‘종전에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투자를 한 경우 간접투자기구 단계,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및 직접투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실제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방국의 감면효과 보존을 위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공제·환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급금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에 대하여도 그 절차상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에 터잡아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절차 등을 간주하도록 한 쟁점투자신탁에 대한 환급세액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 취소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8항에 따른 환급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2021. 12. 21. 법인세법 개정 시,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제57조의 2 삭제),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제57조 제1항 후단 및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심판례]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서0961, 2021. 12. 15.

[사안] 청구법인은 2013.2.22.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3.12.26. 물적분할을 통해 회생절차 내에서 부인권(否認權) 소송(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을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 A를 설립함. A는 2017.3.31. 회생법원에 2016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2017.4.3. 이를 불허가함에 따라 2016년~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2019.12.2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됨. 청구법인은 A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하여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소득의 환류가 불가능한 A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형평 등에 반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배당에 환류하지 아니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원의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배당신청 불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형평, 합헌적 해석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서6849, 2022. 1. 19.

[사안] 청구법인들은 2016년~2019년 중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 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 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 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예규] 토지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3, 2021. 12. 21.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예규는 기존 해석(법인세과-804, 2009. 7. 14.)을 변경한 것임(해당 기존 해석은 삭제됨).

[예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020, 2022. 1. 25.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취득한 후,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TKC 코멘트]

-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079, 2021. 10. 27.).

[예규]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2021. 12. 17.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투자부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파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TKC 코멘트]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타목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파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말하는바, 상기 유권해권에서 문제된 대가(consent fee)는 쟁점 채권이 해외공모사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이 투자부문인 점에 비추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됨.

한편,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법규과-881, 2013. 8. 1.).

[예규]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2022. 1. 25.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와 달리, 기존 과세전적부심 결정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적부2020-94, 2020. 12. 23.).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394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주식회사 A(“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임. 이 사건 회사는 2011년에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12.3.경 종전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하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6.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뒤,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이 사건 환입금액”)함. 이 사건 회사는 2016.10.28.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인 B가 자신의 소유지분 46%(“이 사건 실권주”)를 전부 포기하자 이는 모두 원고에게 모두 재배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실권주 재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함(“당초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i)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하나, (ii) 이 사건 환입금액을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는 내용의 일부 일용 결정이 내려졌음(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 또는 불산입된 금액을 가감하여 실질적인 순손익액을 산정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법인세 산정에서 익금이나 손금을 산입 또는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결과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실제 회사의 순손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감했던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회사의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이 사건 환입금액은 중소기업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활성화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 2012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가,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것으로 이는 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바 없는 가공의 익금이고,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는 증여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이 사건 실권주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실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이 사건 환입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TKC 코멘트]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가 예시적 조항임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나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소정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판단]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를 한 날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어 그 입증책임은 피고들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출된 일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확히 추단될 뿐,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한편, 쟁점 처분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TKC 코멘트]

- 위 대법원 2020두53743 판결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해당 판결 사안에서는 주주명부 등이 작성은 되었으나, 회사의 폐업 등으로 그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구 상증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3항(현행 법령으로는 제4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을 어떤 일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 위 대법원 2017두32395 판결의 입장(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과 달리, 2020. 2. 11. 상증령 개정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됨(상증령 제34조의 2 제2호).

[심판례] 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부5845, 2022. 1. 26.

[사안] 청구인은 2016. 5. 3. 주식회사 A(“양수법인”)에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이를 총칭하여 “쟁점부동산”)를 매도하고,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그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양수법인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음.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호텔건물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2021. 7. 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부가가치세법이 법률 제16101호로 2018.12.31.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9조 제9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8. 12. 31. 개정 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제2호가 신설(2019. 1. 1. 시행)되어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가, 2021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1. 12. 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호텔건물은 철거하기로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쟁점호텔토지만을 실질적인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쟁점호텔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쟁점호텔토지만을 타운하우스 시설의 신축·분양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매매대금은 쟁점호텔토지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약정(실지거래가액)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호텔건물에 대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가 매매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엇갈리는 결정을 한 바 있음(과세대상이라는 결정으로 조심 2013중1563, 2013. 7. 12.,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으로 조심 2018부4509, 2019. 8. 6.).
- 한편, 2021. 12. 8. 신설된 부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부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심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0부8164, 2022. 1. 26.

[사안] D의 배우자 C 및 자녀 B, A(상속개시일 당시 C의 복중 태아, 이하 C, B, A를 총칭하여 “청구인들”)는 2018년 8월경 사망한 D의 상속인들로, 2019. 2. 28. 상속세 신고 시 B(자녀)와 A(C의 복중 태아)를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이하 “쟁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에 처분청은 D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 7. 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 A는 「민법」 제1000조와 상속세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이 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으로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위 「민법」 조항의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A가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는 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의 부양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으며, 상속법상 미성년자 공제 또는 동거가족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것으로 요하나, 상속인의 경우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A에 대해 쟁점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에 대해서도 쟁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1996년 태아에 대해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26년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예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 1. 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임.

[예규]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9-법규재산-0992, 2022. 1. 20.

주식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차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TKC 코멘트]

-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서면-2021-법규재산-4357, 2022. 1. 19.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TKC 코멘트]

- 시행령 조문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상증령 제15조 제13항 제1호).
- 한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준고용인원의 80% 또는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유에 관계없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2819, 2016. 2. 17.).

[예규]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 1. 5.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는 2022. 1. 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됨.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질의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는,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춘다는 전제 하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50%)를 상속하였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 중 12,000주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나머지 3,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사안임.
- 기존 국세청 예규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8, 2021. 6. 7.).

지방세 분야

[판례] 원고와 A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A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2464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인 F건설은 모두 주식회사A를 지주회사로 하는 A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들로, A그룹은 2015년도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였음. 원고는 2015. 8. 31. F건설로부터 F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호텔(“이 사건 호텔”) 발행주식 중 일부(총 발행주식의 67.56%, “이 사건 주식”)를 양수하였으나(“이 사건 거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판단] 국제기본법 시행령은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제1조의 2 제3항 제2호 라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A건설이 A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고는 F건설이 단순히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점 이외에 서로 간에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와 F건설은 비록 동일그룹의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인 점, 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3항 제2호 나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향력을 행사는 주체는 ‘법인 본인’이어야 하는바, 원고 또는 F건설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F건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4231(병합)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들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들로, 그 중 원고 A는 2015. 2. 18. B렌탈 인수에 관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2015. 3. 11. B렌탈 주식 100%(“이 사건 주식”)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지위이전 합의’에 따라 2015. 6. 3. 이 사건 주식 중 50%를 취득하였음. 한편, 원고 A는 매수자금이 여전히 부족하자 외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식 중 30.39%에 해당하는 주식(“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원고 A로부터 인수하였음. 이와 별도로, 원고 A 등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2015. 5. 28.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원고 A 등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에 따른 현금흐름 등 일체의 경제적 손익과 고정적인 수익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주식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TRS”) 계약,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들은 원고 A 등은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 등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B렌탈 주식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판단] 원고 A 등은 TRS 계약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금전 차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각 비교 분석하여 TRS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이 옳은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서 원고 A 등에게 위임된 이상, 원고 A 등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 5년간 위임한 것은 유효하지만, 그 경우에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부정된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원고 A 등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당한 경제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 등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1지0836, 2021. 12. 29.

[사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쟁점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는데, 처분청은 그러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함.

[판단]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새로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는 구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0지3280, 2022. 1. 10.

[사안] 청구인은 2016.10.31. A(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증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1.24.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이 2020.2.22 선고되었음. 청구인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0.3.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자인 A는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A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요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고 기존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더라도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1지2811, 2021. 12. 17.).

[심판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조심 2021지0744, 2022. 1. 25.

[사안] 청구법인은 2016.11.10.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2016.12.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지특법”) 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4.13.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하였음. 수탁자는 2019.5.14.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이 건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특정 호실(“쟁점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쟁점지식산업센터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였음.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구 지특법 제58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해당하는 한편,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한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 업무를 위탁하였고, 수탁자는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하다 할 것임(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 4. 8.).

[예규]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448, 2021. 12. 23.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의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분할의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과 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분할법인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 사업부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흡수합병의 형태(「상법」 제530조의 6 제1항)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TKC 코멘트]

-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1누34741 판결, 피고 불상고로 확정).



관세 분야

[심판례] 명품 휴대용 시계("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특수관계 등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분의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20관0153, 2021. 12. 31.

[사안] 청구법인은 2015.5.18.부터 2018.11.25.까지 특수관계자인 시계 제조회사로부터 휴대용 시계("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및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함.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의 도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결과 추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교세(제1방법 인정)하였고, 소매거래(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매부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20.5.1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2021.3.30.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구분손익 자료는 Intra-Sales 개념에 따라 소매거래의 경우 도매거래를 경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과소 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 제출한 Intra-Sales 효과를 제거한 소매부분 손익 자료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한 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및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청구법인의 소매부분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였던 것을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등 다시 제출한 소매부분 구분손익이 동종·동류비율 110%를 초과하여 동종동류비율로 다시 계산한 가격으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공제비율이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낮아짐) 과세가격(제6방법)을 결정한 후, 2021.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제척기간 도래에 따른 적부심결정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감액 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결정한 현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자가격에 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계수(Coefficient)는 수입국 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소매상 마진 및 수입자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되도록 결정됨. 다만,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적용된 계수 및 국내판매가격 등을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계수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수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한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비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또한 구분손익계산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구분손익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들이 공시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 판매물품에 대하여 각각 거래단계별로 구분된 이윤 및 이윤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그동안 관세조사에서 제1방법으로 추정하였으나 2014년 관세조사에서 하자보증비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자 영향여부에 대해 ACV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적정성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1방법을 배제한 것이 신의성실원칙 위배라는 주장과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다만,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쟁점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TKC 코멘트]

- 관세는 수입물품 개별 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와 달리 각 물품에 대한 손익 등(회계자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음. 정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관세평가 제4방법과 같이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일정 이익(마진)을 차감한 가격이 되도록 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출됨. 본 사례와 같이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거래구조(도·소매) 등에 따라 이익률을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회계기준(GAAP)과 관세법에 부합한 방법이라면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수익·비용 등을 구분하여 개별 물품 또는 물품군에 대해 다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관세평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회사에게 최대한으로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대응으로 관세당국과 납세자가 사전에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인 ACVA(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심판례] 한-베트남 FTA 상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20관0191, 2022. 1. 11.

[사안] 청구법인은 2017.6.14.부터 2018.10.22.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베트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2.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베트남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0.2.11. MOIT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MOIT는 2020.5.8. 검증요청 물품이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함. 그러나 처분청은 MOIT의 원산지결정기준 회신문 및 증빙자료로 송부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CD(동영상)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2020.6.18.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 한 것으로 결정을 한 후, 2020.7.14.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인 원산지조사 결과(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배제 예정)를 통보함. 처분청은 2020.8.3.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쟁점①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9.10.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20.10.8.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통지(“쟁점②처분”)를 받음.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i)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ii)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iii) 패셔닝(Fashioning) 제품, iv) 무봉 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 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은 재단과 봉제 해당여부가 쟁점으로, 풀패셔닝 방식으로 편성 제조한 쟁점물품은 한-베트남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도 FTA 협상 시, 재단과 봉제를 편성과는 별도의 공정으로 협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협정관세 배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인 MOIT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간접검증에서도 MOIT 가 원산지 충족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편성공정이 재단과 봉제 해당여부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으로 판단함.

[TKC 코멘트]

- FTA협정 적용 시 협정 상의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본 사안의 경우 수입과세당국은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서 제6110호에 해당하는 의류의 원산지 결정은 명확하게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공정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가공공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재단(cut)공정에 대하여 상식적인 사전상 정의를 참조하여 패셔닝 공정에도 재단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하더라도, FTA 협정문에서 그 공정을 다른 공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명문된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정내용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관세청과 수입자 사이의 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FTA 특례법과 협정에서는 재단과 봉제의 정의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또한 의류 제조 현장에서는 분류방식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점점 더 최신식 의류 제조기술(3D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재단과 봉제없이 바로 니트 제품 편성)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은 과거의 체결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수입과세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에 보충기준으로 가공공정기준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전 사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사전 진단 등을 통해 미리 원산지 검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심판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아니하고 잠정가격으로 확정 한 후 사후에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기각)

조심2021관0098, 2022. 1. 28.

[사안] 청구법인은 2003.3.8.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 만료전인 2007.1월경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계약기간을 2016년 3월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① “계약연도의 시작으로 부터 6개월 전까지 가격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연도의 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되나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적용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계약연도의 종료시점까지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 기간의 적용가능한 가격산정공식이 잠정조치로서 계속 적용된다.”와 ②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청구법인은 2014.4.23.~2016.3.24.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전 계약연도에 적용된 잠정계약가격을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2016.3.31.까지 16차에 걸친 가격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017.7.27. 국제중재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2020.8.8. 국제중재 판정으로 최종가격이 확정됨. 당초 확정가격 신고가격은 2016.4.20.~2018.2.23.까지이나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함에도 최종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 신고한 가격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20.8.8. 최종가격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 부가세, 가산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였기에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고,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지정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지정된 확정가격 신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 가격재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정가격 신고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도 아니한 채 종전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사후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음. 중재절차에 따라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실제 세입누락이 발생함.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한 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TKC 코멘트]

- 가산세 면제여부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고 가산세 면제지침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청구법인이 잠정신고가격으로 확정신고 한 것이 납세의무자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법인은 양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이전 기간 적용한 잠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 당시 처분청에는 어떠한 사실도 통지하지 않고 확정가격 연장 제도가 있음에도 어떠한 질의나 협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확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제2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확정하려는 등 통관지 세관과의 협의가 전혀 없고, 가산세 면제신청 시에도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에 정당한 사유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와 처분청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